◉ 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26-18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2026. 11. 10.	55-2025-10-0000003	(주)영신디엔씨 대표이사	무선측위국	2장치 증설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55-2025-10-0000003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송산비봉로 2, (신천리)	영신송산측위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MHz)	전파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2025-10-0000003	457.175	8K50F1D	8.5 kHz	2 W	1장치
	457.175	8K50F1D	8.5 kHz	2 W	2장치